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5 발의연월일: 2016. 6. 20.

발 의 자: 박주민·강병원·강훈식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기동민・김경수・김관영

김두관 · 김병관 · 김병기

김병욱 · 김영호 · 김종대

김종민 · 김종회 · 김철민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남인순 · 노웅래 · 노회찬

도종화 · 문미옥 · 박경미

박재호 • 박 정 • 박찬대

백혜련 • 서영교 • 설 훈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송옥주 · 신동근 · 신창현

심상정 · 안호영 · 원혜영

유동수・유성엽・윤소하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이개호 · 이동섭 · 이재정

이정미 · 이찬열 · 이철희

이춘석 · 이해찬 · 이 훈

임종성 · 전재수 · 정재호

정춘숙・제윤경・조승래

조응천·최운열·추혜선 표창원·홍영표·황주홍 황 희 의원(70인)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었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 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 1항).
- 라.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 마.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 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 나.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한 사람
- 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작수사(공무워을 제외한다. 이하 "부상 잠수사"라 한다)
- 마.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이하 "부상 자원봉사자"라 한다)
- 바. 4·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던 학생
- 사.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

제6조제1항제1호 중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를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 및 $4\cdot16$ 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피해자의"를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피해자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학적"을 "완치될 때까지 의학적"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로 본다.

- ② 부상 잠수사 및 부상 자원봉사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 본다.
- ③ 희생자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기 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희생자"란 <u>「4·16세월호참</u>	2 <u>다음 각 목의</u>
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u><신 설></u>	<u>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u>
	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람
<u> </u>	나.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
	망한 사람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	3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
	상을 입은 잠수사(공무원
	을 제외한다. 이하 "부상
	 잠수사"라 한다)
<u><신 설></u>	<u>마.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u>

<신 설>

<신 설>

라. (생 략) 4. (생략)

-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 | 1. ------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 <u>다)에</u> 대한 「민법」, 「국가 배상법 | 등 관계 법령에 따 른 손해배상금
 - 2. (생략) ②·③ (생 략)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 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이 하 "부상 자원봉사자"라 한다)

바. 4·16세월호참사 당시 경 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던 학생 사.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 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

아. (현행 라목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지급대상) ① -----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 및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 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 <삭 제> 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 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 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 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 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생략)
-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16 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 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 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 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 ④ (생 략)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저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 등의 검사·치료) ① ----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에20 五(8일시킨 ㅁ 8) ①
<u>.</u>
1. (현행과 같음)
2 <u>피해자가 완치</u>
될 때까지 피해자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신설>

	-
	-
	-
	-
<u></u> 완치	
될 때까지 의학적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 른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로 본다. ② 부상 잠수사 및 부상 자원 봉사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 본다. ③ 희생자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 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 연금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본다.